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9년도 사단법인인천밀알 행복한일터의 예산(안) 총액은 세입 322,816,000원, 세출 322,816,000원으로 한다.

제 2 조 1. 세입·세출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.(관 또는 항 단위)

2. 세입의 주요 재원

관/항	사업수입	보조금수입	후원금수입	전입금	이월금	잡수입	총세입
예산	83,600,000원	201,351,000원	15,180,000원	2,000,000원	19,685,000원	1,000,000원	322,816,000원

3. 세출의 주요 재원

관/항	사무비	재산조성비	사업비	잡지출	예비비 및 기타	총세출
예산	196,336,000원	5,600,000원	120,337,000원	100,000원	443,000원	322,816,000원

제 3 조 세입·세출 예산 명세서는 붙임 「2019년 행복한일터 세입·세출 예산(안)」과 같다.

제 4 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총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제 5 조 예산의 전용에 있어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0조, 제16조에 의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·항·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다만,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대표이사(또는 시설장)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
제 6 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및 후원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7 조 제5조와 제6조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, 법인이사회회의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8 조 기타 회계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변경된 과목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며 그 외 예산 총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.